

소 장

원 고 이 내 영
피 고 (주) 제일은행

주주총회결의취소의소

소송물가액금10,000,100원정

첨부인지액금50,000원정

송달료액금33,600원정

서울지방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이 내 영

위 원고 소송대리인

1.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박원순)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5-3 신정빌딩 401호
2.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김진욱, 김석연)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75-1 고려빌딩 3층
3. 변호사 조광희
서울 서초구 서초동 1554-14 영웅빌딩 3층

피 고 주식회사 제일은행(第一銀行)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대표이사 유시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

청구취지

1. 피고의 1997. 3. 7. 주주총회에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결의,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결의, 정관변경승인결의, 이사 및 감사선임 결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피고회사의 주식 5000주의 주주입니다.
2. 피고회사는 1997. 2. 각 주주에 대하여 1997. 3. 7.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제일은행 본점 4층강당에서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할 취지의 통지를 하였습니다.
3. 그리하여 피고회사 정기주주총회는 1997. 3. 7.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100 제일은행 본점 4층강당에서 개최되어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결의를 하였습니다.

위의 정기주주총회에서 의장인 제일은행 은행장 직무대행 이세선은 제1호 의안인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승인의 건, 제2호 의안인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승인의 건을 동시에 상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총회꾼으로 보이는 황인섭으로부터 ‘원안대로 승인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몇몇 주주들이 제일은행의 경영내용과 주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장 이세선은 형식적인 답변만을 한 후, 총회꾼으로 보이는 일부 주주들의 제1, 2호 의안 통과 동의재청과 삼청이 있자 표결절차 없이 제1호 의안과 제2호 의안이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4. 이어서 의장 이세선은 제3호 의안인 정관변경의 건을 상정하였고, 역시 총회꾼으로 보이는 이순규로부터 ‘집행부에서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자, 의장은 별다른 표결절차 없이 제3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몇몇 주주들이 정관변경에 대한 질의를 하기 위하여 발언권을 신청하였으나 의장은 계속 이를 무시하였고, 제3호 의안 통과선포 후에야 의장은 비로소 정관변경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주에게 발언권을 주었습니다. 간신히 발언권을 얻은 한 주주가 정관개정안 가운데 제29조 제4항 “대주주대표 및 소액주주대표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1년, 이사회가 추천하는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는 조항에서 노조대표를 이사 및 감사에 한명씩 참여시키자는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동의안에 대한 재청여부는 말할 것도 없고 가부에 관한 의결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5. 이어서 의장 이세선은 제4호 의안인 이사 및 감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고 그 내용을 설명하였는데 이사 및 감사의 후보로 제청된 사람들에 대한 아무런 사전 정보나 자료없이 이름만 나열함으로써 이사 및 감사 후보자들의 경력, 자질, 능력등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없었고 주주로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해 알 길이 없었습니다. 역시 총회꾼으로 보이는 이정해로부터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의장의 복안을 듣고 그대로 통과시키자’는 동의가 있었고, 의장의 형식적인 이사 및 감사후보 제청이 있는 후 별다른 표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부 주주들의 박수만으로 제4호 의안 임원 선임의 건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질의를 하고자 발언권을 달라고 요구하는 몇몇 주주들의 발언권 및 표결권은 철저히 무시되었습니다. 의장이 가결을 선포한 후에야 발언권을 한 주주에게 주었고 그 주주는 바로 이러한 점을 통렬히 비판하기도 하였습니다.

6. 주주총회의 의사방법에 관하여는 상법의 제반규정과 의사에 관한 관행 및 일반원칙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주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주주총회 운영의 당연한 명제이고 주주총회에 관한 상법상의 모든 규정이 이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 분산되어 경영자 또는 지배주주의 횡포가 가능한 현대공개회사에서 일반주주의 보호를 위해 의사의 공정은 더욱 절실합니다.

주주총회에서 의장은 의사의 공정질서확보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1997. 3. 7. 제일은행 주주총회에서 의장 이세선은 찬반의 유도, 주주발언의 봉쇄 등 편파적으로 의사를 진행함으로써 현저하게 불공정한 방법으로 결의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주주총회에서의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상법에 규정한 바가 없지만 적어도 찬반의 의결권수를 산정할 수 있도록 거수, 기립, 기명투표 등의 방법에 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장 이세선은 최소한의 표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일부 총회꾼으로 보이는 자들의 박수만으로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더우기 총회에서 ‘원안대로 의안을 통과시키자’라고 발언한 자들은 피고은행이 고용한 이른바 총회꾼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등 혐의로 고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이 과연 주주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또는 정당하게 의결권대리행사를 위임받고 총회에 참석한 것인지의 여부도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7. 그리고 총회의사록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76.7%가 출석하였다고

되어 있으나 형식적으로 출석하여 기념품만을 수령하고 실제 총회에는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이 대다수이므로 상법소정의 의사정족수를 채웠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8. 이에 원고는 결의방법이 법령과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불공정한 청구취재 기재의 주주총회에서의 결의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부득이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입증방법

갑제1호증 주주총회의사록

갑제2호증 고발장 사본 (이른바 총회꾼들에 대한 업무방해죄등 피의사실에
 대한 고발장)

그밖의 입증방법은 소송의 진행에 따라 제출하겠습니다.

첨부서류

- | | |
|------------|------|
| 1. 소장부분 | 1통 |
| 1. 위 입증방법 | 각 1통 |
| 1. 납부서 | 1통 |
| 1. 소송대리위임장 | 1통 |

1997. 5. 6.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나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원순 (인)

법무법인 시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욱 (인)
담당변호사 김석연 (인)
변호사 조광희 (인)